

#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에 관한 청원 검 토 보 고

## 1. 경 과

- 청 원 자 : 고동순(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외 4,014명
- 소개의원 : 최호정의원(국민의 힘, 서초 제4선거구, 보건복지위원회)
- 접수일자 : 2022.10.13.
- 회부일자 : 2022.10.21.

## 2. 청원요지

- 과천시와 경계지역으로 서울 서남부지역의 관문인 서초구 우면동 선암IC일대 도로는 늘 혼잡하고, 지하철역 하나 없는 대중교통 빈곤지역으로 유일한 대중교통인 버스는 항상 만원으로 우면동 주민들의 교통복지가 매우 열악함 또한 우면동과 바로 접하여 과천의 주암뉴스테이지구, 과천3기신도시 16,000세대가 2026년까지 입주예정으로 선암IC 일대 교통정체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가 함께 추진한 광역철도 위례과천선 내 “선암IC역”을 조속히 도입하여 교통지옥인 우면동에 주민 삶을 위한 기본 인프라인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염원하며, 위례과천선 선암IC역이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청원함

### 3. 소개의원 요지

- 우면동 내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교통복지 실현 및 기본 인프라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를 요청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가.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제출의견: 동의(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sup>1)</sup>)
  - 정거장 위치는 향후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및 제3자공고를 거쳐 다양한 민자계획(안)을 국토부에서 평가하고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통해 확정 예정
  - 향후 민간사업자와 협상과정에서 서울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거장이 신설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 추진

---

1) 교통정책과-36060(22.12.15.) “제315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 및 청원에 대한 의견제출”

##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청원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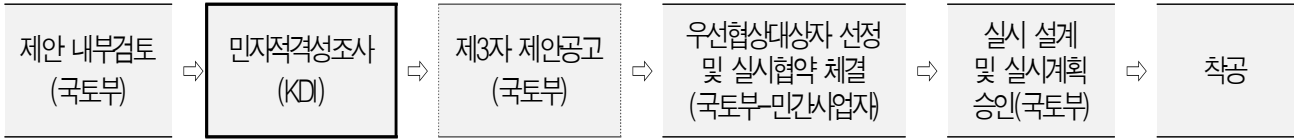
- 동 청원은 혼잡한 서초구 우면동 선암IC일대에 현재 국가에서 추진중인 광역철도 위례과천선 내 선암IC역을 설치하여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주민 삶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시민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 위례과천선 추진현황 및 계획

- 위례과천선(북정~정부과천청사, 총 연장 22.9km)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과천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에서 추진 중인 광역철도로 제3차 및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 고시된 바 있음
- 위례과천선은 국토교통부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21년 말 대우건설이 민자 제안하였고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부 검토를 통해 '22년 9월 현재 KDI에서 민자적격성 조사중이며 정거장 신설에 따른 역 추가 및 위치조정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노선임

※참고: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



※참고: 위례과천선 추진현황

- 노 선 명: 위례과천선(광역철도)
- 구 간: 북정~정부과천청사
- 사업내용: 연장 22.9km(복선전철)
- 사 업 비: 1조 6,990억원
- 사업목적: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제고
- 추진경위
  - '16.06.27.: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국토부)
  - '17.02.28.~03.1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건의(+추가건의)(사→국토부)
  - '19.10.: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사→국토부)
  - '20.05.: 과천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위례과천선 포함(국토부)
    - 위례과천선 종점 연장(경마공원→정부과천청사), 광역교통개선대책비 4,000억원 반영
  - '21.07.: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고시(국토부)
    - 사업구간: 북정~정부과천청사(22.9km), 총 사업비: 1조 6,990억원
  - '21. 말: 위례과천선 민자제안(대우건설 →국토부)
  - '22.09.: 민자적격성조사 의뢰(국토부 → KDI)
    - ※ 민자제안노선의 정거장, 경유지 등은 대외비로 비공개상황

■ 위례과천선 선암IC역 설치 관련

- 위례과천선은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노선으로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었으나 관

런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어<sup>2)</sup> 노선 및 차량기지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청원의 요지대로 서초구 우면동 선암IC일대는 과천시와 경계지역으로 교통혼잡이 심하고 주변에 지하철역이 없으며 주암뉴스테이지구 및 과천 3기 신도시 16,000세대가 2026년까지 입주 예정일 뿐 아니라 서초 보금자리지구, 우면2지구 일대의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위례과천선 내 선암IC역 신설 자체에는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과천시에서는 선암IC와 인접한 과천주암지구 내 주암역 설치를 주장하고 있고 두 역 간 거리가 1km도 되지 않아 2개역을 지나는 노선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자체 간의 합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현재 진행중인 민자적격성 통과 및 제3자 제안공고 이후 다양한 민자 계획안에 대한 평가 및 협상을 통해 최종 노선이 확정될 예정임
- 따라서 서울시는 위례과천선의 노선에 대해 4개 지자체 협의안을 포함하여 여러 대안 노선 검토와 함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결국 광역철도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정거장 신설 문제를 바로잡고 시민들의 교통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관련 법령에서<sup>3)</sup> 광역철도의 표정속도가 50킬로미터 이상

2) 대장흥대선은 착착 진행, 위례과천선은 13년째 계획 수립중... 왜?(조선일보, '21.7.24.)

3)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광역철도) ① 법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각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역을 모두 신설하는 경우 표정속도 저하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한 사업타당성 확보가 불투명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규 대안 노선 등 사업타당성 확보가 가능한 노선 발굴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를 말한다.

4. 표정속도(表定速度,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